

# 綜合建設業 免許制 導入에 對한 提言

姜泰錫

(株)韓建 綜合建設事務所

건설부는 지난 1989년 12월 13일 건설회관에서 2천년대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제도의 정비책의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체계 개편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개편방향중 종합건설업면허제를 신설 도입하여 업종 및 업무 범위에 건축설계, 감리, 시공은 물론 토목, 조경, 전기, 통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건설공사 전반인 전문기술용역 분야를 이 신설제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당시 우리 협회에서는 宋基德회장 이하 다수의 회원이 공청회에 대거 참석하여 당시의 출속한 입안법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실정법을 무시한 同제도입안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 항의하였다. 또한 우리 건축사들의 고유업무인 설계, 감리분야가 종합건설업면허제도에 포함될수 없다는 전국 3천5백여 회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관계요로에 건의하였다.

이에 당국은 우리 건축사들의 주장과 당위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동 제도를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유보키로 결정하였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시한이 임박해지고 시장개방의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정부는 그 협상방안으로서 同제도의 도입방안을 다시 거론하여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루파이라운드의 주요골자는 선진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어비스산업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려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어떻게하면 개방을 최소화하고 국내업체를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그럼 과연 정부에서 협상방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건설업면허제란 어떤 내용인지 건설부에서 발표한 1989. 12월 공청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우리의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 정부의 “건설업 면허체계 개편 방안”

### ○ 종합건설업면허제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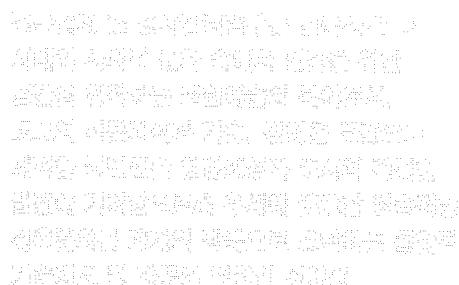
토목·건축·전기공사등 건설업의 수평적 기능과 설계·시공·감리등 건설업의 수직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제

### ○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건설업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면허나 등록을 각 부처에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성이 큼
- 건설수요의 고도화·복잡화에 따라 건설공사 수행의 종합화·시스템화의 필요성 증대에 부응
- 시공 중심에서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의 육성 방향으로 건설업 발전을 선도
-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시 엔지니어링분야의 경쟁력 제고
- 건설업체간의 역할분담으로 종합건설업은 시공보다는 설계나 공사관리 등의 소프트분야에 주력도록 하고 건설업체의 전문화·계열화를 유도

### ○ 도입방안

- 영업범위 : 건설업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등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업,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
- 면허기준 : 자본금—200억원(공제조합출자 : 1,000좌), 기술능력—기술자 100인(기술사 10인 포함), 건설업 경력(일반건설업)—10년 이상, 경영관리자—경영자(임원) 중 5인은 건설업 경영관리경험이 10년 이상
- 기타 조치 : 일괄하도급을 허용하되 하도급관리의무 부여, 도급하한선을 상향조정, 기술개발에 대한 의무부여



### ○현행 면허체제의 문제점

- 건설공사의 종합적 설계·시공·감리기능의 제약
  - 용역업과 시공업의 분리로 건설수요폐단이 고부가가치화, 엔지니어링화는 장기발전추세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면허별 業域분류 기준의 합리성을 결여
  - 특수건설업의 경우,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별도의 業域으로 인정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축물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업종이 있음.
  - 건설공사 관련행정이 다원화되어 있음
    - 건설공사에 관한 행정이 각 부처에 다원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건설업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이 곤란
    - 동일시공에 대한 산발적인 규제로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곤란

### ◆ 종합건설업면허제 입안의 반대이유 및 문제점

#### 1) 반대이유

첫째, 정부가 '86. 9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하여 '90년대말까지 건설 서어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 자유화 및 개방에 대응하고 건설수주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구실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를 종합건설면허업체에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는 엄연한 실정법과 배치되며, 국내·외 건설시장을 특정 재벌기업에 독점시키려는 정경유착의 근시안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용역의 육성정책을 스스로 역행하는 제도이고, 재정 금융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축시키려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는 건축사간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인간을 위한 공간을 창작하는 조형예술의 분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근간으로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조성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후세에 傳承할 영속적인 건축문화를 개개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종합적 기술지도 및 자문의 역할인 것이다. 반면 건설업은 자본과 인력, 장비를

이용하는 단순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수단의 행위에 불과하고, 특히 시공기술은 발전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용도로서 소멸되는 것이다.

셋째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는 시공기술 및 관리와 상대적으로 우위 내지는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 되어야 하는 바, 설계, 감리자가 종합건설업체에 예속 또는 피고용인의 위치에서는 전문성 있는 작품활동은 물론 창작의욕이 기업경영 차원에서 배제되는 우를 초래하게 되고, 이로인한 건축물의 질적저하는 물론 건축문화의 퇴조를 조장시키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넷째, 과거 정부예산의 절감,工期의 단축, 합리적인 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 건축물을 대형 건설업체에 일괄 발주(Turnkey Base System) 하여 정당한 경쟁절차 없이 독점시키므로 나타난 각종 부조리 및 시공부실은 소기의 기대효과 보다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를 초래했던 사례를 귀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는 반드시 시공업무와 분리되어야만 그 기능이 건전하게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 2) 예측되는 문제점

첫째, 종합건설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용역분야별로 다원화 되어있는 현 체계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원화하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인 안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오늘날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추세가 고도로 전문화,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관련 전문기술용역분야를 재벌기업에 합병 내지는 종속케 함으로써, 기업의 독점을 유발시키고 상호 견제기능의 상실은 물론 산업사회 저변의 기조가 동요케 되어 전반적인 기술 퇴보와 함께 중소 건설업체의 시장이 잠식 당하는 혼란을 초래케 될 것이다.

둘째, 종합건설면허제 도입으로 모든 건설공사의 기획, 조사, 설계, 감리업무 등 전 분야를 일괄수주로 수행케 함은 현행 설계, 감리제도를 死文化 하려는 의도로서, 건축물의 시공관리, 유지관리등을 검사, 판단하는 종합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셋째, 재벌기업에 종합건설면허를 독점 제한할 경우 국내 건축사들의 업무 영역이 축소 내지는 잠식 당하게 되고, 해외 진출의 문호가 차단되어, 국제수준의 기술축적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또한 기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재가 재벌기업들의 영입경쟁으로 사회적인 질서가 파괴되어, 건축계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시켜 업무능력이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영세화가 가속화될 것은 예견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개방시점에 편승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기관별로 종합건설면허업체에 솔수 통합하려는 의도는 엄연한 실정들과  
 차이로써, 실제, 감리와 시공의 특수성을 끌어내려가 사사로서  
 정부는 이 문제에 우리 건축문화의死活이 걸려있다고 보고  
 업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건축사들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自省하며 건축계가 주도하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관민이 합심하여 건설산업의  
 제반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힘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고,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 이래 오늘에 이르는 25여년 동안 우리 건축사들은 오직 자생적인 각고의 노력으로 국가 건설의 근대화 사업에 조형창작예술인으로서 건축문화 창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통의 건축문화와 현대화된 건축기술을 세계만방에 소개함으로써, 선진조국의 국위선양에 일조하였던 것이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이었다고 강조한다면 지나친 자찬이라고 평할 수 있을까?

1990년 6월 현재 우리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는 3천5백여 회원이고, 단독건축사사무소 1천7백, 종합건축사사무소 5백여개사이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66개사로 팔목할만한 전문기술 용역단체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과거 25년여 동안 우리 협회의 각 회원사무소에서 정부정책의 지원이나 보조없는 열악한 조건을 무릅쓰고, 수많은 전문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수련, 육성시킴으로써 제2의 산학교육기관의 역할을 대행하여 왔고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국내 건설업계는 물론 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는 해외건설수출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건설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제 우리 건축사들은 4반세기에 걸쳐 체험한 경륜과 창의력을 첨단과학과 고도의 기술에 접목시켜 국내건설산업은 물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에 충분히 대처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다고 자신한다.

### ◆ 對 정부 건의사항

우구파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개방시점에 편승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감리업무를 종합건설면허업체에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는 엄연한 실정법과 배치되며, 설계, 감리와 시공의 특수성을 몰이해한 처사로서 동제도의 입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시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실현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1) 현행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전폭

개정하고, 건축사사무소가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특수법인화 제도입안

- 2) 국내 및 해외진출 건축사사무소에는 기술용역 육성 차원에서 금융, 세제등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 3) 건축설계와 감리업무는 현행 제도 범위내에서 각기 고유의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와 종합건설업체간의 상호 동반자(Partner Ship) 제도 의무화
- 4) 현행 국내 건축사의 설계, 감리 보수요율을 국제 수준으로 대폭 인상 현실화하고, 외국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설계 용역비의 창구 일원화
- 5) 설계용역의 국외 발주시 외국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계획설계에 국한하고, 국내 건축사로 하여금 실시설계, 감리 및 행정사무업을 위임할 수 있는 협조설계 체제의 제도화

### ◆ 국제 개방화에 따른 협회의 대책방안에 대한 제언

우리 협회와 건축사들은 1960년대초 건축문화의 불모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대건축을 사회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功과 過의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국제 개방화 시점에 즈음하여 대내적으로는 보다 빛나는 건축문화의 정착과 국가 건설산업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협회에 제언한다.

- 1) 본 협회에 해외기술 정보교류 센터의 설립운영
- 2) 건축 실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협회 부설 또는 위탁교육기관을 정하여 건축 보조사들의 수시 또는 정기 교육강좌 개설
- 3)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는 건축사 제도의 개선 등이 검토·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우리 건축문화의死活이 걸려있다고 보고 업계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건축사들도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의존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自省하며 건축계가 주도하는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관민이 합심하여 건설산업의 제반체질개선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힘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